



월간 뉴스레터

Smart decisions. Lasting value.

2024년 4월호

Contents

회계정보

- 최초 외부감사 회사를 위한 감사인 선임제도 온라인 설명회 실시

세무 및 법률정보

-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2024년부터 달라지는 부가 가치세
- 최신 세무예규 · 판례

한올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관리회계/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Transaction Service

[한올회계법인은 매출액기준 업계 7위 규모이며, Global Top10 회계 네트워크의 하나인 Crowe Global의 한국 Member Firm입니다.]

한올회계법인의 뉴스레터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올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연락처

전화번호 : 02-316-6646(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kr

Website : www.crowe.kr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8층, 10층 (우 : 06179)

ABAS 본부
02 - 316 - 6621

회계정보 등

■ 최초 외부감사 회사를 위한 감사인 선임제도 온라인 설명회 실시

-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 선임 필요 -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fss.or.kr]

주요내용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함께 최초 외부감사대상회사를 위한 감사인선임제도 온라인설명회를 실시합니다.

√'24.4.8.(월) 유튜브(검색어: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www.fss.or.kr), 중소기업중앙회(www.kbiz.or.kr), 외국인투자옴부즈만(ombudsman.kotra.or.kr)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최초외부감사대상 회사들이 감사인지정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감사인선정주체, 절차, 보고요령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최초로 외부감사대상이 된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고, 계약체결 후 2주 이내에 증선위에 보고해야 하며, 위반시 감사인 지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외부감사대상회사들이 법정기한내에 감사계약을 체결·보고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대상 판단기준, 감사인선정주체, 선임절차, 전자보고 요령 등을 알기쉽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온·오프라인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들의 외부감사 법규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개요

1. 개요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로서,

◦매년 5천개 이상('23년 6,821개) 회사가 외감대상에 신규 편입

외부감사대상 회사수 추이(개)

구 분	'21 년	'22 년	'23 년
외부감사대상*	33,250	37,519	41,212
신규 외감	5,182	7,964	6,821
외감 제외	3,676	3,695	3,128

* 외부감사대상 회사수는 매년 12 월말 기준



□ 최초로 외감대상이 되는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고, 계약체결 후 2주 이내에 동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 동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감사인 지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이에,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함께,

◦ 신규 외감대상 중소기업·유한회사가 외부감사법규를 숙지하여 법정기한 내 감사계약을 체결·보고할 수 있도록 유튜브채널 등을 통해 감사인 선임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

(참고) 외부감사대상 회사 판단기준

□주권상장법인, 상장예정법인

□비상장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직전 사업연도말 아래 구분기준 중 하나에 해당)

구 분	주식회사	유한회사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500 억원 이상	
소규모회사 외부감사 대상기준	<2 가지 이상 해당>	<3 가지 이상 해당>
	자산 120 억원 이상	자산 120 억원 이상
	부채 70 억원 이상	부채 70 억원 이상
	매출액* 100 억원 이상	매출액* 100 억원 이상
	종업원수 100 명 이상	종업원수 100 명 이상 사원수 50 명 이상

*12 개월 미만 시 12 개월로 환산

주요내용

2. 설명회의 주요 내용

□ (감사인 선임제도) 외부감사 대상회사 판단, 감사인 선정주체 및 선임절차*, 기타 주요 외부감사법 제도 등을 알기 쉽게 안내

*① 외부감사인 선정기준 등 마련 → ② 외부감사인 선정 → ③ 외부감사인 선임보고(감사계약 체결 후 2 주 이내) → ④ 외부감사 사후평가

□ (전자보고요령) 실제 감사인 선임보고시 사용되는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이용법과 절차를 상세히 설명 (붙임 참조)

*회사가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서류를 온라인(<http://eacrs.fss.or.kr>)으로 제출하고, 진행과정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설명회 세부 내역

구분	주요 내용
감사인 선임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감사 대상회사 및 판단기준 - 감사인 선임기한 및 계약기간 - 감사인 선정기준, 선정주체 - 감사인 선임보고, 사후평가 -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제출
감사인 선임 전자보고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소개 - 고유번호 발급방법 - 감사인 선임보고서 제출방법

향후계획

3. 향후 계획

□ 유튜브*, 금융감독원(www.fss.or.kr) 「업무자료-회계」, 중소기업중앙회(www.kbiz.or.kr) 「정보마당-유관기관공지」, 외국인투자옴부즈만(ombudsman.kotra.or.kr) 「알림마당」에 교육자료, 동영상 등 게시

* 검색어 '금융감독원', www.youtube.com/fsskorea

◦아울러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한 상담·문의*에도 신속히 답변

* 홈페이지 문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 [업무자료] ⇒ [회계] ⇒ [회계질의] ⇒ “질의회신 및 Q&A신청” 클릭하여 Q&A 통해 질의

전화문의 : (02) 3145-7763/7767

(붙임) 감사인 선임 전자보고 방법

1. DART 접수시스템(<https://filer.fss.or.kr>)에서 발급받은 고유번호 및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http://eacrs.fss.or.kr>) 로그인



금융은 튼튼하게

금융감독원은

급변하는 대내외 금융환경과 다양한 위험요인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DART 접수시스템 고유번호로 로그인


원격지원서비스

 외감선임 및 제외 문의 **02. 3145. 7767**
기타 보고제도 문의 **02. 3145. 7763**
로그인 & 인증서 문의 **국번없이 1332 (5번)**
시스템(오류) 문의 **02. 3145. 5463**

* 고유번호 발급 등 관련 문의 : 국번없이 1332(이후 ⑤→①→①)

2. 화면 상단의 '회사·제출서류' 탭을 선택 후 화면 왼쪽에서 '감사인 선임보고서' 클릭

금융감독원 | 외부감사계약보고서시스템 원격지원서비스 [→]

기본정보 **회사·제출서류** 감사인·제출서류 수시보고 접수 접수현황 공문 및 첨부서류 샘플 다운로드

감사인 선임보고서

외감대상 제외신청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감사전 연결 재무제표 제출

감사인 지정(재지정) 신청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 등 제출

지정 기초자료 신고서 (상정법인)

감사인 선임보고서

보고제도 문의 02. 3145. 7767
시스템 문의 02. 3145. 5463

1. 회사개황

1-1 회사명	운영시바용	1-2 회사고유번호	00000000
1-3 법인등록번호	1111112222224	1-4 사업자등록번호(본점)	1168214464
1-5 법인구분 (?)	선택	1-5-1 금융회사에 해당 여부	선택
		1-5-2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해당 여부 (?)	선택

3. 회사의 상황에 맞게 개황 내용 작성

감사인 선임보고서

보고제도 문의 02. 3145. 7767
시스템 문의 02. 3145. 5463

1. 회사개황

1-1 회사명	운영서버용	1-2 회사고유번호	00000000
1-3 법인등록번호	1111112222224	1-4 사업자등록번호(본점)	1168214464
1-5 법인구분 [?]	선택	1-5-1 금융회사에 해당 여부	선택
		1-5-2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해당 여부 [?]	선택
1-5에서 유한회사인 경우	1-5-3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 여부	선택	
	1-5-4 변경일자(1-5-3에서 '예'인 경우) [?]	YYYYMMDD	
1-6 감사위원회의 설치 여부 [?]	선택	1-6-1 감사위원회의 설치 대상여부 [?]	선택

* 항목별 작성방법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 업무자료(회계) → 외부감사인 선임 → 외부감사 FAQ → 2024년 최초 외부감사 회사를 위한 감사인 선임제도 온라인 설명회 강의자료(80번)를 참고

4. 관련 문서 첨부 후 신고서 제출

2. 제출할 문서 첨부

2-1 감사인 선임보고 제출 공문		파일 선택
2-2 감사계약서 사본		파일 선택
2-3 해당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		파일 선택
2-4 감사인 교체 사유		파일 선택
2-5 전기감사인의 의견전송 내용		파일 선택
2-6 감사위원회 의사록		파일 선택
2-7 감사인 선임 위원회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 의사록		파일 선택
2-8 감사인 대리제출에 대한 위임장		파일 선택

* 회사개황에 따라 첨부문서창의 활성화 여부가 달라지므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외의 첨부문서창이 활성화되는 경우 회사개황 정보를 다시 확인

5. 제출 후 '접수현황' 탭에서 회사의 문서제출이력 및 세부내용을 확인가능

회사 · 제출서류 감사인 · 제출서류 수시보고 접수 **접수현황** 공문 및 첨부서류 샘플 다운로드

(신) 제출현황

보고구분: 선택 접수일자: 2023.04.02 ~ 2024.04.02 [조회](#) [초기화](#)

처리상태: 선택

총 18 건

접수번호	보고구분	첨부파일	접수일시	처리상태	이동	처리일자	확인중
20240308000008	감사인 선임보고서		2024.03.08 14:31:24	접수완료			조회

6. 수정이 필요한 경우 '재제출'을 통해 업로드

2. 제출할 문서 첨부

2-1 감사인 선임보고 제출 공문	#-0jp3_ - 복사본.jpg
2-2 감사계약서 시본	#-0jp3_.jpg
2-3 해당 회사의 법안등기부등본	#-0jp3_ - 복사본 (2).jpg
2-4 감사인 교체 사유	#-0jp3_ - 복사본 (2) - 복사본.jpg
2-5 전감사인의 의견전송 내용	
2-6 감사위원회의 의사록	
2-7 감사인선임위원회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 의사록	
2-8 감사인 대리제출에 대한 위임장	

[수정 \(재제출\)](#) [첨부파일 다운로드](#) [인쇄](#) [닫기](#)

* 재제출 방법 : 접수현황 → 수정 대상 서류선택 → 수정(재제출) 클릭 → 내용 수정 및 문서 첨부하여 접수

※처리상태 관계없이 재제출 가능하며, 수정을 반복한 경우 마지막 접수서류 기준으로 처리

세무자문본부
02 - 316 - 6630

세무 및 법률정보 등

지방세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지방세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4.19.~5.9., 20일간) 하였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①재산세 제도개선 사항과 올해 초 발표된 ②「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 ③「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24.3.28.) 등의 지방세 지원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세 납세자 세부담 완화

- **(공정시장가액비율)** 지난해 1 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되었다.
 -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2022년 45%로 낮추었고, 2023년 주택가액에 따라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추가적으로 낮춘 바 있다.
 - *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 (‘23년) 3억 이하 43% / 6억 이하 44% / 6억 초과 45%
 - * 다주택자·법인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연장하지 않으면 다주택자·법인과 같이 공시가격의 60%가 1주택자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어 세부담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된다. 이번 특례 연장에 따라 공시가격의 43~45% 수준으로 과세표준이 산정되어 1주택자 세부담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 이는 고금리·고물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일 경우 주택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 **(과세표준상한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는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이다.
 -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하였으며, 이번 후속 입법조치는 올해 첫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 기존 재산세 과세표준은 별도의 상한 없이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 가량 인상한 금액*'을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게 된다.
 - *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 + (해당연도 과세표준 x 과세표준상한율 5%)
- 이러한 주택 재산세 세부담 완화 조치를 통해 올해 총 주택 재산세 부담은 5 조 8,635 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 이는 작년 5조 7,294억원 보다 1.2% (711억원)가량 증가한 수치로서 공시가격 증가율인 1.3%*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 * 전국 평균 1.3% (지난해 과세자료에 올해 발표된 공시가격 잠정(안)을 활용하여 산출)
 - 공동주택 1.52%, 단독주택 0.57%
- 또한, 주택 1건당 평균 재산세액은 약 29만 6,176원으로 전년 평균 재산세 29만 2,587원보다 약 3,600원(1.2%) 가량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 다만, 개별적인 세부담 변화는 공시가격 변동률,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상한제 적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 **(인구감소지역 특례)** 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하여 1주택 재산세 특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였다.
 - 앞으로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주택을 추가로 신규 취득한 경우에는 1주택자로 간주하여 1주택 특례가 계속 유지된다.
 - 원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1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자로서, 1주택자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특례*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 이번 인구감소지역 특례가 시행되면 추가 취득한 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기존 주택에 대한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 * 과표 구간별 세율 인하($\Delta 0.05\%p$),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60→43~45%) 적용
 - 대상은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89개) 중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다.
 - * 특례 대상 지역 : 83개(인구감소지역 89개 중 경기 가평, 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등 6개 제외)
 - 이번 세제지원 내용은 지방시대위원회,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공통안을 도출한 것으로, 재산세 감면과 함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1주택자특례*도 적용되어 관련 세부담이 함께 줄어들게 된다.
 -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12억원 이하) 등
- **(미분양 아파트 매입 지원)**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시 취득세 지원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사항도 마련하였다.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1~3%)을 적용해 미분양 물량 해소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 다만, 예외적으로 중과를 배제하는 사안인 만큼,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대책발표일부터 2년간 ('24.3.28.~'25.12.31.) 취득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중과배제를 인정하기로 하였다.

3. 빈집 정비 지원

- 빈집 철거 후 자치단체와 협약하여 토지를 주차장, 쉼터 등 공익적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 정부는 지난해 전국 13만호에 이르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철거시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올해부터 시행하였다.
 - 빈집이 철거되면 부담하는 토지 재산세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부과기준을 철거 전 주택세액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하였다.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24.1.1. 시행)>

- 재산세 합산방식 : (당초) 별도합산 6개월 → (개정) 별도합산 3년
- 주택 세액 기준 세부담 기간 : (당초) 3년 간 인정 → (개정) 5년 간 인정
- 연간 세부담 증가율 : (당초) 30% → (개정) 5%

- 그러나, 지난해 마련된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은 종래 빈집 부지였던 토지가 주차장, 쉼터 등 주민편의시설로 사용되는 때에는 적용되지 않아 자치단체가 빈집 정비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 따라서 철거 후 활용까지 고려하여 빈집 세제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4월 19일부터 20 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국무회의 (5.21.) 의결을 거쳐 공포(5.28.) 즉시 시행되어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2024년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1. 재화의 간주공급 대상 명확화(부가법 제 10 조 제 1 항)

종전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화의 간주공급 ○ 과세사업 관련 생산·취득한 다음의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②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③ 영세율 대상인 수출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주공급 대상 명확화 ○ 과세사업 관련 생산·취득한 다음의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 및 비과세사업에 사용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 등)

2.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사유 규정(부가법 제 8 조 제 9 항, 부가령 제 15 조 제 2 항)

종전	개정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사유 <input type="checkbox"/>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①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③ 사업자가 인가·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④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⑤ 그 밖에 사업자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사실상 폐업한 경우 추가 <input type="checkbox"/> 사실상 폐업하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① (좌 동) ② (좌 동) ③ 사업자가 인가·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u>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u> ④ (좌 동) ⑤ 그 밖에 사업자가 이와 유사한 사유로 <u>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u>

3. 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의 미등록 관련 제재 근거마련(부가법 제 60 조 제 1 항, 부가령 제 11 조 제 6 항)

종전	개정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미등록 관련 제재 <input type="checkbox"/> (사유) 사업개시일 20일 이내 미등록 사업자 <추 가> <input type="checkbox"/> (등록) 관할세무서장 직권등록 <input type="checkbox"/> (가산세) 공급가액의 1%	<input type="checkbox"/> 미등록 제재 대상 확대 <input type="checkbox"/> (좌 동) - 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좌 동)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가산세) 2024.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직권등록) 2024.2.29. 이후 직권등록 분부터 적용

4. 간이과세 재적용 근거 마련 및 대상 추가(부가법 제 70 조 제 4 항·제 5 항, 부가령 제 116 조 제 3 항·제 4 항)

종전	개정
<input type="checkbox"/> 간이과세 포기신고 <input type="radio"/> (대상) 간이과세자, 신규사업자 <input type="radio"/> (효력) 3년간 일반과세자 적용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input type="checkbox"/> 포기신고 철회 근거마련 <input type="radio"/> (좌 동) <input type="radio"/> 3년 이내라도 포기신고의 철회가 가능하도록 근거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간이과세 포기 당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 8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신규사업자 포함)가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 8백만원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 (절차) 재적용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10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7.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추가 및 발행 신청기한 확대(부가령 제 71 조의 2 제 2 항·제 3 항)

종전	개정
<input type="checkbox"/>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input type="radio"/> 사업자의 부도·폐업 <input type="radio"/> 공급계약의 해제·변경 <input type="radio"/>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input type="checkbox"/> 발급사유 규정 추가 <input type="radio"/>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상태 - 휴업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 신청 기한 <input type="radio"/>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input type="checkbox"/> 신청기한 확대 <input type="radio"/> 6개월 이내 → 1년 이내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2.29. 이후 발급 및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6.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부가칙 제 47 조)

증전	개정
<p><input type="checkbox"/>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시 이자율</p> <p>*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 중 임대보증금은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과세 **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 x 과세 대상기간 일수/365 x 이자율</p> <p>○ 연 2.9%</p>	<p>○ 이자율 상향</p> <p>○ 연 2.9% → 3.5%</p> <p>*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과 동일 수준</p>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3.22. 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최신 세무예규 판례

최신 세무예규 · 판례

- 벤처투자조합이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조합원이 외국납부세액 공제 가능 여부 (사전-2023-법규국조-0662, 2024.03.29)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現「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청 (現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벤처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벤처투자조합의 재산을 관리·운용하고 있음.
 - 질의법인이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은 (이하 '쟁점투자조합') 국외 투자소득 (이하 '쟁점소득')에 대하여 현지에서 원천징수세액 (이하 '쟁점세액')을 납부한 바 있음.
 - 쟁점투자조합은 쟁점소득에서 쟁점세액 및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한 세후 소득을 회수하여 조합원들에게 출자지분율에 따라 분배.

(질의내용)

- 벤처투자조합이 국외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이 그 쟁점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벤처투자조합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국외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 (이하 '쟁점세액')한 경우,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 시 「소득세법」 제 57 조 또는 「법인세법」 제 57 조에 따라 쟁점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공제 대상 외국납부세액은 현지 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내일채움공제 만기 수령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시, 감면 적용의 기준시점 (사전-2024-법규소득-0111, 2024.04.0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의 재직자 중 '19. 1 월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직원이 있는데, '24. 1 월에 만기가 되어 수령금을 지급받게 되었음.
- 질의법인은 위 재직자의 내일채움공제 가입 당시 중소기업이었으나, '23. 4 월말부터는 중견기업으로 전환되었고, '24. 3 월 말부터 다시 중소기업으로 전환될 예정임.

(질의내용)

-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5 년 이상 납입하고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 29 조의 6 제 1 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이하 "쟁점세액감면") 적용시, 감면 적용비율은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수령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중소기업의 근로자로서 내일채움공제사업에 가입하여 공제납입금을 납입하던 중 소속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전환된 후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 29 조의 6 제 1 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 비율은 같은 항 제 1 호 가목 또는 제 2 호 가목에 의하는 것입니다.

-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의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서면-2023-법인-0472, 2024.04.08)

(사실관계)

- C 법인(이하 '질의법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조정을 거침.

- '11. 9 월 A 법인은 적격물적분할을 통하여 B 법인을 설립한 후 B 법인 주식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이하 '쟁점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함.

- '11. 12 월 질의법인인 C 법인은 분할법인인 A 법인을 흡수합병함으로써 쟁점 압축기장충당금을 승계받음.

- 질의법인인 C 법인은 완전자회사 B 법인을 적격흡수합병할 예정임

(질의내용)

- 분할법인 (A 법인)을 적격합병함으로써 분할신설법인주식을 승계받은 합병법인(C 법인)이 완전자회사인 분할신설법인(B 법인)을 적격합병 시 쟁점 압축기장충당금이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 내국법인(A 법인)이 적격물적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B 법인)을 설립하고 분할신설법인(B 법인)의 주식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 (쟁점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한 후, 해당 내국법인(A 법인)을 적격흡수합병한 합병법인(C 법인, 주식승계법인)이 쟁점압축기장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로서,

그 이후에 주식승계법인(C 법인)이 완전자회사인 분할신설법인(B 법인)을 적격흡수합병하는 경우 쟁점 압축기장충당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 84 조 제 7 항 단서 및 제 8 항에 따라 주식승계법인(C 법인)이 합병 시 승계하는 자산 중 당초 물적분할한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업 무 소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 ▪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 ▪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 ▪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 ▪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 ▪ 조직, 인사 전략 / HR ▪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 ▪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 ▪ M&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 ▪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 ▪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 ▪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 ▪ 정보화계획/ IT Consulting ▪ CRM / Risk Management 등 ▪ ESG 전략 및 시스템 구축자문
문의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 ~ 10층 (우편번호 06179) TEL: (02) 316-6646, FAX: (02) 775-5885, E-mail: secretary@crowe.kr
발행인	한울회계법인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LLC is a member of Crowe Global, a Swiss veren. Each member firm of Crowe Glob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Glob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Crowe Global member.